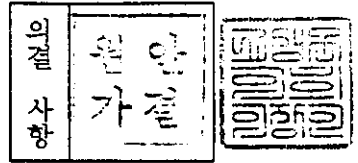


의안번호	제 284 호
의결년월일	1995. 5. 27. (제 33 회)



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년월일	1995. 5. 19.

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284
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1995. 5. 19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개정사유 및 주요개정내용

- 현행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 제증명등 수수료 요금표 별표1중 제3호의 증명항목중 폐지된 신원증명서를 삭제하고 신설된 국제 결혼증명·국제 결혼신고를 추가 보완 하려는 것임.

(관련근거 : 지방13010-221. '93.12.24호, 지방13230-234. '95.3.4호와 관련임)

2. 본 문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

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.

구 분	기 준	요 액	비 고
(증 명)			
3. 본적·주소 신상에 관한 증명			
(1) 국제 결혼증명	건	3,300원	
(2) 국제 결혼신고	"	100원	
(3) 부양사실증명	통	300원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(별표1)제증명등수수료요일표(제3조관련)				(별표1)제증명등수수료요일표(제3조관련)			
구 분	기 준	요 액	비 고	구 분	기 준	요 액	비 고
(증 명)				(증 명)			
3. 본적·주소 신상에 관한 증명				3. 본적·주소 신상에 관한 증명			
(1) 신원증명서	1 통	200원		(1) 국제결혼증명	건	3,300원	
(2) 부양사실증명	1 통	300원		(2) 국제결혼신고	"	100원	
				(3) 부양사실증명	통	300원	